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27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 : 허 영 · 윤준병 · 박상혁

임호선 · 김문수 · 전재수

장철민 · 위성곤 · 황 희

홍기원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 선고"라는 용어를 집행유예를 제외한 의미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형"을 "실형"으로,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종료된"을 "끝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생 략)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u>형</u> 을 선고받고	4 <u>실형</u>		
그 집행이 <u>종료되거나 집행을</u>	<u>끝나거나(집행이</u>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		
	<u>터</u>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5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u>종</u>	<u>2</u>		
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u>난</u>		
니한 사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